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일러두기

- 본 사례집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현장에서의 학적 업무 처리 과정의 질의사항을 취합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사항별 안내사항,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사례집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학적 영역), 경기도 2022 중등 학적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주요 학적 업무 처리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학적 민원에 대한 일관성있는 민원 응대를 통해 신뢰도 제고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본 사례집 구성은 경기도 2022 중등 학적 길라잡이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및 교육부의 공문 안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의 방법

단위학교 내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학칙에 따라 학적 업무를 처리하되, 도움이 필요할 경우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부득이하게 상세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문의함.

문의 방법

학교에서

-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질의함.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해석에 대한 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 (단위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 단위학교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교육청 업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답변함.

교육청에서

- 교육지원청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교육부 해당부서에 문의함.
-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함.

[유의사항]

- 본 사례집에는 다양한 교육정책(학교폭력,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질의함.

Contents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1. 관련 법령 및 용어
2. 배정·입학관리(취학의 독려 및 독촉)
3. 전입학·전출
4.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5. 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6. 조기진급 및 졸업
7. 기타(위탁교육 등)
8. 고등학교 주요 학적처리 관련 (자퇴, 퇴학, 휴학 등)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1

관련 법령 및 용어

1 관련 법령 및 용어

1. 관련 법령

❶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❷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23호)

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66호)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 · 경고 및 통보),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6조(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❺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제2조(정의), 제5조(자비유학자격)

❻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1조(목적),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❼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제2조(정의)

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832호)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❾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2. 용어 및 해설

1. **의무교육:**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2.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재취학, 취학 포함)는 입학으로 처리함.
-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3. **입학기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의 장이 정한 날

4.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예시)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5.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6.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7.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
- 유예, 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음.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자료가 전송됨 (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함).

8.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

9.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10.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11.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2. 조기진급: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음.
- 조기진급 절차 및 방법
  1) 조기진급 신청(학생, 학부모) → 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 평가 → 조기진급 인정 결정
  2) 조기진급에 관련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함.

13.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4.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1)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2)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평성관리-대상자생성]의 [유급자관리]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3)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원격수업 일수(고)는 제외함).

15.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6. 면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17.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8.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유예자가 발생한 경우 중학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유예자가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19.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1.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2.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재취학한 학생은 유예, 면제 등의 학적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취학 등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귀국학생의 배정된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임.

23.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4.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음.
-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1) 조기졸업 신청(학생, 학부모) → 대상자 선정 → 조기졸업 평가 → 조기졸업 인정 결정
  2) 조기졸업에 관련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함.
-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음.

25.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1)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2) 심의 절차: 심의 신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26. 정원 외 학적관리: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대상자로 결정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학년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 정원 외 학적관리 시작일은 수업일수에 불포함.

(참고사항)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과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의 한 사유임).
  - 귀국 후 재취학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정규교육기관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인정유학
  - 인정유학을 제외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함.
  - 외국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이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할 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2

배정·입학관리
(취학의 독려 및 독촉)

2 배정·입학관리(취학의 독려 및 독촉)

Q.1 **중학교 입학 배정·재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1 각 지역별로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입학을 희망하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중학교 입학 배정 계획'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업무 담당 부서(주로 학생배치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Q.2 **중학교 입학을 하지 않고,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이미 중학교 배정을 받았다면 배정 포기해야 하나요?**

A.2 해당 시설은 학력이 미인정되므로 중학교 배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배정된 학교로 입학 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시 유예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학적으로 관리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상 학생의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항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165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2쪽

Q.3 **입학등록일(신입생 예비 소집일)과 입학일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3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며, 학생의 보호자에게 추가 입학등록일을 통지하고, 이때, 추가 입학등록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경찰 협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통지서로 안내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 현황 및 최종 입학등록 결과는 관내 교육장에게 일일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11~12쪽

Q.4 **국내의 초등학교를 졸업 후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재외 한국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출국 예정은 2월인데, 1학년 입학은 4월입니다. 배정받은 국내 중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학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전 가족이 타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에 해당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상 학생은 재배정 대상자입니다. **배정받은 중학교에 배정포기서를 제출하고**, 해당 재외한국학교에서 입학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배정·재배정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교육지원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배정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바랍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12쪽

Q.5 **입학일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 동의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나요?**

A.5 입학일~입학일 이후 2일(3일차)까지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미취학 아동·미인정 결석 학생 소재지 조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지 않음. 다만, 사전동의 없이 이용가능한 사무이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13~14쪽

Q.6 **취학일(입학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소재확인이 되지 않는 국내 학생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 결과 출국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A.6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출국이 확인된 경우 가정방문은 생략 가능합니다.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소재·안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적은 면제 사유가 아니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야 하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13~14쪽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중학교)」
「고등학교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기준(고등학교)」

Q.7 미인정 결석의 종류와 장기 미인정 결석의 보고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A.7 미인정 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학원수강 등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됩니다.

경기도 관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장기 미인정 결석 대상자 기준일은 초·중학교 10일, 고등학교 7일입니다.

〈참고〉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13~14쪽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중학교)」
「고등학교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기준(고등학교)」

Q.8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 처리 후, 가정 내 사정·학생의 정서불안·치안문제 등의 사유로 귀국(재취학)하였을 때 나이스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8 나이스의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에서 '복귀여부'를 'N'에서 'Y'로 변경하여 재보고하면 됩니다. 해당 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역 교육지원청 학적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학업중단 사용자 교육자료(교육부) (나이스 광장)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3

전입학·전출

3 전입학·전출

Q.9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지역의 인근 중학교에 3월 2일자로 입학할 수 있나요?**

A.9 이사 간 지역의 재배정 기간(1월 중)이 종료된 경우, 관할 교육지역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규정에 따라 전출·입을 신청합니다. 최초 배정된 중학교로 입학 후 입학일에 거주지 관할 학군의 중학교로 전출·입 가능하며, 이 경우 학년초 전출·입교 간 원활한 연락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 전입교가 대입 농어촌전형 자격관련 해당이 있을 경우 3월 1일 동일 날짜에 전출·입 처리 가능함.)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내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10 **새학기 시작일인 3월 2일에 전입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10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하므로 전출일은 3월 1일로, 전입일은 3월 2일로 합니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농어촌전형 대입 진학을 고려하여 3월 1일 같은 일자로 전출·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쪽~42쪽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0쪽

Q.11 **전출일과 전입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전출·전입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11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합니다. 참고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적용받는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합니다(8.28. 전출일인 경우 9.1.에 전입 가능). 전출교와 전입교의 개학일이 다른 경우 전입교는 방학 중이라도 전입학을 처리하여 전출일과 전입일의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합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쪽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0쪽

Q.12 전출일과 전입일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2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에 전출하고 화요일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함.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쪽

Q.13 전입생 학교생활기록부는 전입교와 전출교 중 어디서 정정해야 하나요?

A.13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1쪽(하단 유의사항 참고)

Q.14 전입생의 학년에 대한 반을 잘못 배정하여 학적반영을 했을 경우 반 수정이 가능하나요?

A.14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반변경](중), [학적-기본학적관리-계열/학과/반변경](고)에서 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Q.15 전출교에서 누락자료 전송이후 전입교에 자료 이관을 요청하였을 경우, 전입교도 학적반영을 취소해야 하나요?

A.15 전입교에서는 학적반영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전출교에서 누락 자료 전송한 항목만 선택하고 자료이관합니다. 이때, 전입교에서는 학적반영 이후 입력된 자료는 자료이관하면 덮어쓰기가 되어 전입교의 자료가 삭제되므로 미리 출력하여 자료를 다운받아 자료이관 이후 재입력하여야 합니다.

〈자료이관 경로〉

나이스의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학적반영]에서 전입생 선택-학적 반영 자료선택(최종수신일자)에서 추가반영할 항목명(예:학생생활)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하고 이관할 자료를 선택한 후 자료이관

〈참고〉 2023학년도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중학교용) II 48쪽

Q.16 **나이스 미사용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의 전입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6 국내학교에서 전입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추가}하여 전입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하되, 전학 서류를 참고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47쪽
2023학년도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중학교용) 33~34쪽

Q.17 **국내학교에서 나이스 미사용 재외 한국학교로의 전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7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확인하고,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고,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한국학교장에게 제출합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전출관리요청접수]에 전출생 학교생활기록부 생성(전출자료 전송 하지 않음) 후 {상신}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학적반영}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47쪽
2023학년도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중학교용) 64~65쪽

Q.18 **타 중학교와 나이스 미사용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입 이후 다시 전출하여 본교로 전입학했습니다. 나이스 미사용 재외 한국학교으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전입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8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추가}하여 전입생을 등록하고, 재외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등록]에서 입력합니다.

※ 본교에서는 타 중학교 자료 및 재외 한국학교 자료를 모두 받아 입력해야 함.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47쪽, 161~162쪽
2023학년도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교무업무 매뉴얼 II (중학교용) 33쪽~34쪽

Q.19 **방학 중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1학기를 마치고 성적처리까지 완료된 학생이 아직 학기 중인 국내 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2학기 시작하는 날로 전입을 받아야 하나요?**

A.19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의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쪽

Q.20 **전출지에서 직장 및 집 문제로 부(父)만 제외하고 가족이 전입왔는데 전출지에서의 직장 문제로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부분 전입 사유서와 추가 서류(부(父)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를 받아 전학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교육지원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업무담당 부서에 문의바랍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21 **이혼가정으로 어머님이 학생과 함께 지내다가 친인척 주소지에서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입 처리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1 전입 가능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교육지원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전·편입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예시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전입 처리가 가능한 경우의 제출 서류는 친권자 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양육위임동의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양육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내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22 **이혼가정으로 친권자가 아닌 부(父)가 자녀와 함께 전입 처리 시 친권자인 모(母)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전입이 가능하나요?**

A.22 세부 절차와 구비서류 등은 교육지원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전입학 업무담당 부서에 문의바랍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23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로부터 선배치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3 접수받은 공문을 근거로 일반 학생처럼 나이스로 전출·입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28쪽
해당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20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참고

Q.24 **타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학교운동부 3학년 남학생이 운동을 포기하고 거주지역의 일반중학교로 다니겠다고 합니다. 이때 타지역 학교에서는 운동부 포기원 등 서류를 받고 처리했습니다. 전입하고자 하는 거주지역의 학교에서는 운동과 관련된 기존 전입학 서류 외 어떤 서류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하나요?**

A.24 일반 학생 전학서류에 준하여 받으면 됩니다.

〈참고〉「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28쪽
해당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25 **전학 온 학생이 위장전입으로 보이는데 실사확인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위장전입이 확인된 경우 어떤 절차로 원적교로 보내나요? (내부기안, 실사에 대한 절차 등)**

A.25 전입생의 거주확인 실사는 전입교에서 전입 전 또는 전입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합니다. 위장전입 발생 시, 부모의 위장 전입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전입처리 취소, 원적교로 보냅니다. 원적교로 보낼 시 전입 기간 동안의 출결 유형은 전입교-전출교(원적교)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처리 방법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원적교로 보낼 때 전입 처리 취소로 할지 전출 처리로 할지 여부는 전입교-전출교(원적교) 상의필요)

〈참고〉 해당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4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4 면제·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Q.26 **면제처리 시 면제일자는 어떤 날짜로 해야 하나요?**

A.26 면제일자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입니다. 예시로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일, 면제신청서 제출일 등으로, 인정유학자는 출국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37쪽

Q.27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일 이전에 면제 신청을 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27 배정된 중학교에서 면제 처리하되,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하므로 면제일은 중학교 입학일로 하고, 면제일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7쪽

Q.28 **부(父)의 해외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생(우리나라 국적)과 동반 출국한 경우 면제 처리할 수 있나요?**

A.28 면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의 해외 대학원 진학으로 인하여 학생과 동반 출국한 것은 미인정유학에 해당되므로 면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Q.29 **부(父)의 해외 취업으로 해외로 동반 출국하는 일자로 해당 학생을 면제 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때, 면제일의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29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하므로 면제일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 이전까지는 학교에 정상 출석해야 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51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7쪽

Q.30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2월 중순에 이민 예정으로 면제 처리 대상자입니다. 학생 보호자의 면제 신청이 없는 경우 졸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30 면제 처리는 학생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였고, 학기말 성적이 산출되었다면 졸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4쪽

Q.31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인정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면제 처리해도 되나요?**

A.31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제한하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전학)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면제(학적변동)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전학조치 후 전학 간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같은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5~36쪽, 78쪽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Q.32 **복수국적인 학생이 국외로 유학을 가게 되면 외국인 학생과 동일하게 면제로 처리하나요?**

A.32 아닙니다.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 2). 따라서 중학생 복수국적자는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정당한 해외출국 등 면제 사유일 경우에만 면제 처리 가능합니다.
미인정 유학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다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면 학부모의 신청서를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로 처리하고, 인정유학인 경우는 '면제'로 처리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37쪽, 39쪽, 43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7쪽

Q.33 **외국인 학생이 국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 여권 만료로 인하여 2024.12.01.자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학적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A.33 외국인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면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자퇴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자퇴'로 처리하며, 학적 특기사항은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중학교: 2024.12.01.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고등학교: 2024.12.01. 본국 귀국으로 인한 자퇴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36쪽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6쪽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4쪽

Q.34 **중학교에 중도 입국한 외국 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34 장기 미인정 결석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대상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할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여 포기원(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면제'로 처리합니다. 출국한 사후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으로 포기원 및 출국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37쪽

Q.35 **외국 국적 학생이 2학기 초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A.35 외국 국적 학생이 일정한 학력 인정 절차를 마쳐, 입급하려는 1학기까지 이수인정을 받아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로 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진급처리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처리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37쪽

Q.36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중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보호자가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6 **의무교육대상이 아닌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학생 보호자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없이 '면제'로 처리합니다. 면제일은 면제신청서 제출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일, 학령초과자는 만19세가 된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보호자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에서 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37쪽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Q.37 **중학교에서 유예되었던 우리나라 국적 학생이 2023학년도에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것을 확인하여 학생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학적 특기사항의 기재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A.37 2022학년도부터 학적 특기사항에는 해외 수학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입력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두거나, 구체적인 외국 학교명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외국 중학교 졸업으로 면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9쪽

Q.38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예술중학교에 합격하여 다음 학년도에 입학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학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8 합격한 예술중학교로부터 신입생 입학전형 합격과 관련된 공문을 근거로 **면제 처리합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Q.39 학적 용어인 유급, 유예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A.39 유급: 출석일수 부족*(미인정 결석+질병결석+기타결석)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석일수 부족'이라 함은 당해 학교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4쪽, 36~37쪽, 43쪽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

1) **유예(학적 용어):**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임신 또는 출산)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합니다(학칙에 따라 유예일 다음 일자로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2)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행정 처리 용어):** 입학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를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입니다.

Q.40 유예 후 '정원 외 학적관리'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A.40 '유예'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질병, 대안교육기관 재학, 임신, 출산 등으로 유예신청서를 제출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유예일자를 정하며 유예일 다음날부터 정원 외 학적관리됩니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는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미인정 결석(미인정 유학, 학교생활부적응 등)이 있을 경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서를 제출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를 정하며, 처리 당일부터 정원 외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유예'는 학적 용어이며, '정원 외 학적관리'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는 행정 용어로 '유예'는 수업일수에 포함되고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는 이전일까지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3쪽, 53쪽

Q.41 유예 처리 시 유예 일자와 유예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A.41

아닙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유예 일자를 정하면 자동으로 다음날이 정원 외 학적관리 일자(공휴일 등 포함)가 됩니다. 수업일수는 학적변동일인 유예 일자까지 반영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Q.42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42

대안교육기관은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하여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하며,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나,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학력이 미인정되는 기관입니다.

〈참고〉 대안교육 관련 기관(시설)의 개념 및 학력 인정 여부

명칭	개념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각종학교로, 학력을 인정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54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특별교육 이수,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시설·기관**으로, **재적교의 학력을 인정함.** ※ 재적교에 학적을 두고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교육 운영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서, **학력 미인정** ※ 의무교육대상자일 경우 **취학의무 유예 가능**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나,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교육시설**로서, **학력 미인정**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165쪽

Q.43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유예 처리 절차와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4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바탕으로 유예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신청(유예신청서 제출)에 따라 학교장은 그 사유를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로 처리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1쪽

Q.44 **유예 사유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유예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경우 학적 특기사항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A.44 재학 중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2)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3)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

이런 경우 학적 특기사항에는 '(예시)2023.07.13.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2쪽

Q.45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유예 외에 결석일수와 관계없이 유예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45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임신 또는 출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Q.46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유예는 언제부터 유예 처리가 가능한가요?**

A.46 교육감이 정한 질병 유예는 질병결석일수와 관계없이 학생의 보호자가 유예신청서와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 유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학교별 학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학생의 소속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1~54쪽

Q.47 장기(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47 장기(미인정)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중학교)10일, (고등학교)7일 이상 미인정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석의 독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결석당일~2일차: 유선연락으로 출석 독려
② 결석 3일~5일차: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
③ 결석 6일차: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내교 요청
④ 결석 7일~9일차: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 면담, 취학 독려, 9일차에는 장기결석학생카드를 작성하여 교육장 보고
⑤ 결석 10일차 이후~: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복귀한 경우, 교육장에게 복귀현황을 문서로 복귀일 이후 2일 이내에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47~50쪽

Q.48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하는 결석일수를 산정할 때 지각·조퇴·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환산하여 산정하나요?

A.48 지각·조퇴·결과 등의 횟수는 산정하지 않고 결석일수로만 산정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3쪽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 13쪽

Q.49 수업일수에 따른 진급 가능한 출석일수 및 유급 처리 결석의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A.49

수업일수	진급 가능 출석일수	유급결석일수 (미인정 결석+질병결석+기타결석)
190일	127일	64일
191일	128일	64일
192일	128일	65일

예시 진급: 190일 x 2/3이상 출석= 126.6666 = 127일
유급: 190일-진급 가능 출석일수(127일) + 1일 = 64일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5~37쪽 별표7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Q.50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가 190일이라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는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A.50 당해학교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 190일의 3분의 1이 63.333...이므로, 3분의 1이상인 64일째 결석한 다음 날부터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생 보호자의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원을 제출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3쪽

Q.51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1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에 의한 면제·유예 처리를 준용하여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가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3쪽

Q.52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되어 유급이 예상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해야 하나요?**

A.52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계속 수업을 듣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학교를 계속 다녀도 진급 또는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학생, 학부모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신청서를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40쪽, 43쪽

Q.53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로 이동한 1학년 학생이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업일수 반영일자와 학적 특기사항은 어떤 내용으로 입력하나요?**

A.53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로 학적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 학적 처리 당일은 수업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학적 특기사항은 '2023.09.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로 입력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는 '미인가교육시설(○○일)'로 입력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6쪽, 65쪽, 147쪽

Q.54 **유예 학생 또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 학생에게 재취학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A.54 유예 학생은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부터 유예 기간 종료일까지 통지합니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은 학년도 시작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합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8쪽

Q.55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5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의 경우 취학의 면제 또는 유예 시 당해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게 됩니다.

〈참고〉「202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특수교육과)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특수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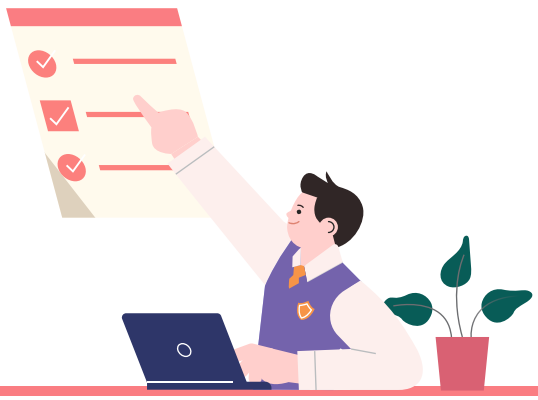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5

재취학 및 편입학·귀국 학생 등 관리

5 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Q.56 **면제 처리되어 국외로 유학한 우리나라 국적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외국학교 부적응 등)으로 한 두 달 뒤(당해 학년도)에 귀국 예정입니다. 이 학생을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56 인정 유학 조건[국외 1학기(6개월) 이상 유학]에 해당되지 않은 면제 사유로 재취학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학적반영을 취소하고 해당기간 동안의 출결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

참고로 입학·재취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쪽

Q.57 **1학기 마치고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 유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이 다음 학년도에 재취학하여 진급하려면 언제 재취학해야 하나요?**

A.57 해당 학생이 1학기를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취학의 경우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학년도 1학기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입급할 수 있습니다.

※ 중복된 기간은 재취학 이후의 출결상황이 반영됨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42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0쪽

Q.58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한 학생이 부적응으로 한 달 후에 다시 원적교로 입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58 학생이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 시 유예 처리되었고 다시 원적교로 입급 시 당해학교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가능하므로 재취학으로 처리합니다.

〈참고〉「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0쪽

Q.59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중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교와 이사한 지역의 학교 중 어느 학교에서 재취학 처리해야 하나요?**

A.59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중학생이 이사를 가면 해당 학군의 학교로 바로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원적교로 재취학하여 이사한 지역의 학교로 전출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한 지역의 재취학 학교에서 원적교로 다음과 같이 나이스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등록}을 클릭한 후 '전편입재취학생 등록'창에서 '변동구분'을 '재취학(타학교)'를 선택하여 등록하여 타교재취학 요청을 하면 원적교에서는 재취학 자료를 전송하면 됩니다.

〈참고〉「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42쪽

Q.60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5월 8일) 후 중학교 1학년으로 입급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입급해야 하며, 어떤 학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A.60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입급해야 하며, 학적 용어는 '입학'으로 처리합니다.

[나이스- 학적사항- 0000년 00월 00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입력

〈참고〉「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9쪽

Q.6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중학교 1~2학년 재학사실이 없더라도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이 가능하나요?**

A.6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취학 및 학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Q.6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이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 가능하나요?**

A.62 재취학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학교장 판단하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학교장이 판단하여,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사실이 있더라도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Q.63 **중학교 1학년 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재학 중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일반 중학교로 재취학이 가능하나요?**

A.63 재취학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학교장 판단하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Q.64 중학교 1학년 학기초부터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중학교 상위 학년으로 재취학이 가능하나요?

A.6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취학 및 학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참고〉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서 학력 미인정

※의무교육대상자일 경우 취학의무 유예 가능(초등)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교육시설로서 학력 미인정

Q.65 유예로 인한 재취학 시 재취학 가능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A.65 재취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0쪽

Q.66 대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중학교로 편입학을 할 수 있나요?

A.66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안내를 권장합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제74조(편입학) 제1항
「평생교육법」 제2조

Q.67 **중학교 1학년 학기초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으로 유예 처리된 학생이 3학년으로 재취학할 수 있나요?**

A.6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일 학교급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기간(이수 학기)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Q.68 **국내 소재 학력미인정 외국인학교(8-2) 재학중인 학생이 국내 중학교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68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미군기지 내 학교,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므로 학력미인정 외국인학교에서의 학년을 그대로 국내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학하려는 학교의 학칙에 따라 재취학 및 학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제주국제학교에는 노스런던컬리지, 브랭섬홀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 한국국제학교가 있음.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쪽

Q.69 **우리나라 국적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출국하여 외국 소재 정규학교를 3개월 다닌 후 귀국하였습니다. 2학년 2학기로 재취학이 가능하나요?**

A.69

불가합니다. 외국 정규학교 이수 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쪽

Q.70 **외국에서 정규학교가 아닌 학력 미인정 초등교육 시설에 입학하여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귀국 후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하나요?**

A.70 불가합니다. 정규학교가 아닌 교육 시설만을 다녔을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내 초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Q.71 **중학교 재취학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평가 대상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A.71 재취학 직전 학기에 개설된 개별 과목이 대상이며,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Q.72 **이전 학년도 2학년 2학기 12월 말에 미인정유학(미인정 결석)으로 출국한 학생이 해당 학년도는 수료하여 3학년으로 진급하였습니다. 다음 학년도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미인정 결석)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이 동일 학년도에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1학기 동안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8월 말에 귀국하여 9월 1일자로 3학년 2학기로 재취학하면 졸업 처리가 가능하나요?**

A.7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여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학년도 3학년 2학기로 재취학하여도 3학년 1학기 동안 미인정 결석이 3분의 1이상이므로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미수료로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쪽, 80쪽
「2022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0쪽

Q.73 **중학교에서 미인정유학으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추후 부모의 해외취업으로 인해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정하여 면제로 변경 처리할 수 있나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73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한 내용을 취소하고 면제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으나, 추후 부모의 해외취업은 면제 사유에 해당되므로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면제로 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면제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기존의 절차 및 서류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유예 후 면제 처리하는 경우 학생이동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5~36쪽, 43쪽

Q.74 **중학교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되어 국외로 유학한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두 달 뒤(당해 학년도)에 귀국 예정입니다. 이 학생을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74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의 경우 당해 학년도 출석일수에 결석일수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은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당해 학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 단,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는 수시로 입급할 수 있음.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 제74조(편입학)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쪽
「2022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0쪽

Q.75 **학기 중 귀국하는 우리나라 국적 중학생의 경우 귀국 후 며칠 이내로 재취학(편입학) 신청을 해야 하나요?**

A.75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재취학(편입학) 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 이내 입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이미 수료하고 방학 전에 귀국한 경우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필요한 만큼의 수학기간이 인정된다면, 최종 재학일 이후 재취학(편입학)은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재취학(편입학) 일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1쪽

Q.76 **인정유학 중학생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결정할 수 있나요?**

A.76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인정유학)으로 면제 후 국내 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4쪽

Q.77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해외 학교에서 이수한 우리나라 국적의 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학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A.77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3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때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97쪽

Q.78 **미인정유학 학생이 귀국하여 재취학 시 어떤 절차를 거쳐 중학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78 미인정유학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재취학 여부를 정합니다. 평가 방법, 평가 내용, 합격 점수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별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합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Q.79 **국외에서 하위 학년을 이수한 우리나라 국적의 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학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A.79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수 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로 입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제 차이로 하위 학기를 이수한 경우 한 학기 월반이 가능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쪽

Q.80 **우리나라 국적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해외로 출국(미인정유학)하여 국내 초등학교에서는 2학기 11월에 정원 외 학적관리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2개 학기만 이수하고 다음해 12월에 국내로 왔습니다. 연령상으로 중학교 1학년 입학자에 해당되나 한 학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학교에서 3월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나요?**

A.80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 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국내 최종학력과 외국 국제학교의 이수 학년을 합하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것이 되므로 중학교 1학년 입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2022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6쪽

Q.81 외국인 등록 사실이 없는 외국인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입급할 수 있나요? 입급이 가능하다면 제출받을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81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외국인 등록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 학생도 국내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전입을 거부할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배정 원칙에 의하여 외국국적 학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학구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9쪽
「2024 경기 다문화교육 추진 계획」 (융합교육정책과) 9쪽

Q.82 외국인 학생이 중학교로 취학 또는 편입학 시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82 외국인 학생이 학력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는 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는 학력인정 및 학년 결정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학력증빙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2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93쪽
「2024 경기 다문화교육 추진 계획」 (융합교육정책과) 9쪽

Q.83 외국 국적 학생이 학년을 낮춰서 중학교 취학(편입학)을 희망합니다. 가능하나요?

A.83 학년 결정은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되, 본인이 낮은 학년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한 번 결정된 학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15쪽

Q.84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이 중학교에 입급 시 학적처리 용어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84 당해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에 입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으로, 그 외에는 '편입학'으로 처리합니다. 학적처리 절차는 일반 학생과 같이 교육지원청 배정 지침에 따라 학교 배정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도와주는 경기도형 다문화 대안학교(예비학교)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2024 경기 다문화교육 추진 계획」 (융합교육정책과)
해당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내 '중학교 전·편입 시행 지침' 참고

Q.85 **2021학년도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9월에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국제학교에 재학하려 하였으나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이후 2022년 3월에 베트남 국제학교의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입급하여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재취학하고자 합니다. 몇 학년으로 입급할 수 있나요?**

A.85 귀국학생의 학력은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학교의 수학 기간만 인정하며,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어학 과정은 수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학원은 정규학교가 아니므로, 수학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국내 최종 학력과 베트남 국제학교의 이수 학년을 합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것이 되므로, 2학년 2학기로 입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6쪽

Q.86 **정당한 해외 출국 사유로 3월 1일자 면제처리 한 중학생이 4개월 만에 원적교로 재취학 하였다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나요?**

A.86 입급 시기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재취학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아동의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여 다음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참고〉「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55쪽

Q.87 **미인정유학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된 중학생이 외국에서 한 학기 이수한 후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 가능하나요?**

A.87 결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초과되어 정원 외 학적관리 된 학생은 당해 학년도에는 재취학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아동의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참고〉「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0쪽

Q.88 **초등학교 6학년 11월(학년말)에 미인정유학 이후 초등학교 졸업처리가 된 학생입니다. 중학교에 배정되어 입학 후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된 상태에서 당해 학년도 7월에 재취학이 가능하나요?**

A.88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은 불가합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입학 후 1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안 됩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아동의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참고〉「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0쪽

Q.89 **미인정유학 중학생이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인정받아 재취학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년 배정을 위하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89 당해 학교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며, 직전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입급 여부를 정합니다.

〈참고〉「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Q.90 **우리나라 국적 학생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출국하여, 9월부터 학제가 시작되는 외국(12학년제)에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마쳤습니다. 귀국 후 3학년 1학기로 재취학할 수 있나요?**

A.90 외국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1학년 1학기 중복이 인정되어 귀국 시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은 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학기를 그대로 인정하여 재취학 학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6쪽

Q.91 **우리나라 국적의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외국학교(12학년제, 4학기제)에서 5학년 4학기부터 8학년 3학기까지 이수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내로 귀국하여 재취학을 신청하게 되면 몇 학년으로 입급할 수 있나요?**

A.91

외국에서 한 학년을 4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4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했을 때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의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수 학기를 합산하여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재취학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제5호 · 제6호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6쪽, 97쪽

Q.92 **우리나라 국적의 귀국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이수 후 외국 정규학교(9월 학제)에서 학제 차이로 6학년 2학기부터 이수하였습니다. 7학년 1학기까지 이수 후 내년 3월에 국내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3월에 재취학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재취학이 가능하나요?**

A.92 불가합니다. 귀국학생이 학제 차이로 인하여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한 학기가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할 때는 한 학기를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로 입학(재취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쪽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6쪽

Q.93 **(예시) 1학년 2학기에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외국에서 2학기를 수료하고 돌아온 우리나라 국적 귀국학생이 재학 당시보다 2학년 2학기인 상위 학년으로 재취학하려는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진급이 가능하나요?**

A.93 가능합니다.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입니다. 따라서 남은 수업일수가 학교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4쪽

Q.94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에 재학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귀국학생이 외국에서 수료한 학년과 학기를 그대로 인정하여 학년을 배정할 수 있나요?**

A.94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로 해당 학교에 재학한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관(대사관)의 공증이 생략 가능하여 귀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과정이 간소화될 뿐, 수료한 학년과 학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에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년을 계산합니다.

〈참고〉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교육부, 2014. 8. 22.)

Q.95 **외국에서 수료한 성적을 재취학·편입학한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나요?**

A.95 불가합니다.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국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39쪽

Q.96 **편입학을 신청한 외국인 중학생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아기수첩에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 경우 아기수첩 내용으로 갈음 할 수 있나요?**

A.96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아기수첩(접종기관의 공식 서명 혹은 직인 필수)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해당 내용을 전산 등록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접종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공식 서명 혹은 직인 필수) 또한 등록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질병관리청)」

Q.97 **외국소재 정규 중학교에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고, 학교생활기록부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해도 인정이 가능하나요?**

A.97 학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해당교 재학기간과 학기별 성적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영문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일 경우 공증받은 번역문(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4쪽
「2022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5~86쪽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Q.98 **외국학교 성적증명서를 재학한 중학교가 아닌 해당 국가 교육부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인정 가능하나요?**

A.98 외국학교 학력인정은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인정 가능하며, 해당 국가 교육부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4~45쪽
「2022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5~86쪽

Q.99 **외국학교(중학교) 학력 증빙 서류에 학교장 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국가 교육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A.99 외국학교 학력 증빙 서류에는 반드시 해당교 학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교육부 또는 영사 확인으로 학교장 서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45쪽
「2022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5~86쪽

Q.100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중학교 2학년의 학력 인정을 받은 외국 국적 학생이 편입학을 신청했습니다. 이 학생의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100 외국 국적 학생이 학년 배정을 받아 편입학하는 경우로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입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2024 경기 다문화교육 추진 계획」 (융학교육정책과)

Q.101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료 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습니다. 9학년 1학기 과정 수료 중 지진으로 인하여 2개월 일찍 귀국하여 마지막 학기를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재취학이 가능한가요?**

A.101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단, 미인정유학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된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로의 재취학이 불가능합니다(3학년 1학기로 재취학 가능).

〈참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0쪽

Q.102 우리나라 국적 학생이 5년 학제인 외국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졸업한 후 외국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재취학이 가능하나요?

A.102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합니다. 5년 학제인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수료하였다면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재취학 가능합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제5호 · 제6호

Q.103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본국 귀국으로 인하여 면제 처리되었습니다. 1년 후 해당 학생이 다시 입국하여 2학년 2학기로 편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 희망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A.103 불가합니다.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학령기 아동으로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포함)입니다. 국내에서 학적이 이미 생성된 학생의 경우 학력 증빙 서류가 있으므로 학력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1항,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2023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교육부)

Q.104 외국인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학업중단을 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해야 하나요?

A.104 외국인 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없이 면제처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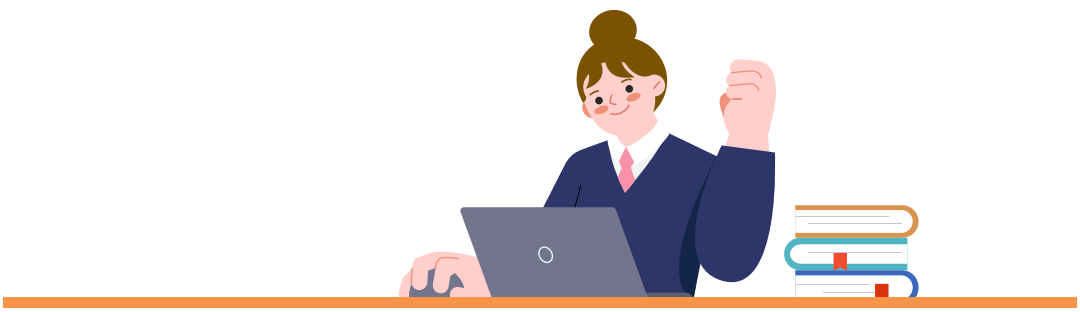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6

조기진급 및 졸업

6 조기진급 및 졸업

Q.105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A.105 상급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므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를 거치지 않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조기졸업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참고〉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110쪽

Q.106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의 의미가 최소 두 가지 시험을 치러야 하나요?**

A.106 네, 맞습니다.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지능 지수 시험에서 각각 140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참고〉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110쪽

Q.107 **명예졸업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학칙으로 정해야 하나요?**

A.107 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별 학칙에 명예졸업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 예시로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기타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110쪽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 ·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과 무관함.

Q.108 **사망한 학생이 있어 명예졸업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칙에 명예졸업 관련하여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8 학칙 개정 시 특례조항을 삽입하여 당해 학년도에 한해 해당 학생에 대해 명예졸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110쪽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7

기타

(위탁교육 등)

7 기타(위탁교육 등)

Q.109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출결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9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학급담임교사가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등록하되, 사유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분류심사원 재소기간 동안은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며, 재적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누가기록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8쪽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5쪽

Q.110 학생이 교과교육을 운영하는 소년원학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10 원적교에서 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중)/[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 학생등록](고)에서 학기 단위로 등록하되, 「소년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소년원학교는 '기타'로 등록합니다.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과목 성적(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내용은 소년원학교에서 송부한 서류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은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69쪽, 164쪽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65~66쪽, 176~178쪽

Q.111 아동학대 피해학생(고)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등교학습 지원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출결과 성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1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 학생등록]에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위탁기관의 출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반영합니다. 그리고 재적교 평가(지필평가·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위탁기관의 출결처리(출석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 등)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참고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결과 성적을 처리합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69쪽, 164쪽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65쪽, 178쪽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2021.10.29.)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16124(2020.11.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교육부)

Q.112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전입 온 학생의 과목 성적이 우리학교의 성적산출 방식과 달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성적'란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과목 성적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112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과목성적'란에는 입력하지 않으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서식은 전입교에서 정합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1쪽, 107쪽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49쪽, 122쪽

Q.113 전입 온 학생의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누가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전입교에 정정 요청을 했는데, 누가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A.113 누가기록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자료의 정정)

Q.114 중학교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이 성인(학령초과자)이 되어 현재 소년원에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좋은 교육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어 부모님이 재취학 후 재학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가능하나요? 의무교육연령이 넘었는데 중학교에서 처리가 가능하나요?

A.114 면제 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재취학 신청서를 받아 재취학 및 재학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학업 중단이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타학교로의 재취학·편입학을 원할 경우 거주지 인근 중학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참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 학교의 전학·편입학)
「2022학년도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80쪽, 81쪽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8

고등학교 주요 학적처리 관련
(자퇴, 퇴학, 휴학 관련)

8 고등학교 주요 학적처리 관련 (자퇴, 퇴학, 휴학 관련)

Q.115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학생이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학생이 일반고로 전입학이 가능하나요?

A.115 전입학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미인가 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기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진로직업교육과)
「경기도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지침」(진로직업교육과)

Q.116 고등학교 3학년 전출·입 허용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A.116 - 평준화지역 소재 일반고의 경우, 3학년은 5월 말일까지 전학 접수한 학생에 한하여 추첨·배정합니다.(단, 학교장이 실시하는 귀국학생 전·편입, 특례 편입학 등은 제외)

- 학교장 전형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전·편입학을 허용합니다.(3학년 2학기로의 전·편입학 허용여부는 학교장이 결정)

〈참고〉「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진로직업교육과)

Q.117 휴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17 휴학 사유로는 임신, 출산 또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상해 등이 있으며 학칙으로 정합니다. 이때 휴학원과 객관적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Q.118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 휴학 처리할 수 있나요?

A.118 불가합니다. 휴학은 학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Q.119 외국소재 학교와 자매결연한 학교로 한 학기 출국하는 경우 휴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119 불가합니다. 휴학은 정원 내로 관리되므로 이중학적으로 처리되어 자퇴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Q.120 휴학생의 복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120 복학은 다음 학년도에 휴학일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Q.121 이민으로 자퇴를 하는 경우 자퇴원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21 영구 거주용 체류 비자 등 이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Q.122 휴학 후 자퇴처리한 학생이 나이스 학생이동부에 휴학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22 나이스 학생이동부에 휴학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퇴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Q.123 출석일수가 부족으로 유급 대상인 학생이 자퇴 처리가 가능하나요?

A.123 가능합니다. 자퇴는 개인사정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Q.124 자퇴원 제출 시 자퇴일 기준으로 며칠 이내에 나이스 학적처리를 해야 하나요?

A.124 나이스 학적업무를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학적처리를 합니다.

Q.125 **자퇴생이 나이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관리에서 비동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5 비동의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2024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 (교육복지과)

Q.126 **자퇴처리가 완료된 후에 자퇴 철회의사를 밝힌 경우 자퇴를 취소할 수 있나요?**

A.126 자퇴 처리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자퇴 취소는 불가합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단위학교별 학교규칙 참고

Q.127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나 부모님이 이혼 후 연락두절되어서 자퇴를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성인(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자퇴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27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참고〉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Q.128 **퇴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28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제7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9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등이 있습니다.

〈참고〉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생활인성교육과)
「2024 생활인성교육과 업무 매뉴얼」 (생활인성교육과)
「2024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생활인성교육과)

Q.129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으로 인한 퇴학은 며칠 이내로 해야 하나요?

A.129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통지 등 조치 이행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조치 이행 절차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퇴학 조치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2024 생활인성교육과 업무 매뉴얼」 (생활인성교육과)
「2024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생활인성교육과)

Q.130 휴학생이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다가 그 다음 학년도 1학기 전에 복학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나요?

A.130 가능합니다. 복학일 기준으로 중복기간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은 삭제되며, 새로 수행한 내용으로 기재됩니다. 다만,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원격수업일수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34쪽, 79쪽

Q.131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월 봄방학 기간에 자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퇴한 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나요?

A.131 원칙적으로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일 전일까지 재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진로직업교육과)

Q.132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당해 학년도에 재입학을 할 수 있나요?

A.132 원칙적으로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일 전일까지 재입학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진로직업교육과)

Q.133 2023년 6월에 자퇴한 학생이 2024년 7월에 재입학할 수 있나요?

A.133 원칙적으로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일 전일까지 재입학해야 합니다. 학업 중단 이전의 출석일수와 재입학 이후의 합산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진급 가능하므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진로직업교육과)

Q.134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마치고 최종 자퇴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자퇴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A.134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의 경우 자퇴 처리일은 학업중단 숙려제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다만, 학업중단 숙려제가 이번주 금요일에 끝난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자퇴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퇴원을 제출하고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후, 학교로 복귀할 때는 자퇴 철회서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024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교육복지과)

2024 중·고등 학적 Q&A 사례집

제작 총괄

김윤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

제작 기획

주주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중등교육과정기획담당 장학관

이시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중등교육과정기획담당 주무관

집필위원

정하정 | 안중고등학교 교사 (집필위원장)

김삼곤 | 고양교육지원청 주무관

김지영 | 수주중학교 교사

류예슬 | 이천교육지원청 주무관

유동휘 | 과천중앙고등학교 주무관

이윤진 | 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권월향 | 덕이중학교 실무사

김인정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무관

김하람 | 용인교육지원청 주무관

안소정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주무관

이유숙 | 송전중학교 교사

임세경 | 백신고등학교 실무사

검토위원

이은경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중등교육과정기획담당 장학사

김주애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중등교육과정기획담당 장학사

장미나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주무관

이현범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김지선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김은정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박여진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사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인쇄처 | 디자인펌킨

발행월 | 2024. 4월